

주주 여러분께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최일시 : 2016년 3월 28일(월) 오전 9시 00분

2. 개최장소 : 본점 소재 빌딩 3층(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우림비즈니스센터) (TEL : 02-2093-2839)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기(2015년도)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별첨)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1호: 사외이사 박문호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2-1호: 사내이사 박재호 선임의 건

제2-2-2호: 사내이사 김시연 선임의 건

제2-2-3호: 사내이사 권건우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12억원→15억원)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1억원→2억원)

제5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개정 전후 신규대조표 본문 첨부)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

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 방법

- 1) 직접행사: 주총참석장(동봉됨), 본인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지참
- 2) 대리행사: 주총참석장(동봉됨),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참석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신분증

간접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9. 기타 첨부서류

별첨1. 제2기 재무제표

첨부1.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약력

첨부2. 정관 신규대조표

2016년 3월 11일

주식회사 엑셈

대표이사 조 종 암 (직인생략)

첨부 1.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약력

□ 사내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재호	1971.06.13.	부	없음	이사회
김시연	1970.04.02.	부	없음	이사회
권건우	1971.07.26.	부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박재호	(주)엑셈 연구개발(C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학사 -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 석사 - (現) (주)엑셈 상무이사(CTO) 	없음
김시연	(주)엑셈 기술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 - (現) (주)엑셈 상무이사 	없음
권건우	(주)엑셈 해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박사 - 삼성 SDS - (現) (주)엑셈 상무이사(마케팅)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상기 내용은 주총결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외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내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문호	1959.10.15.	부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텍사스 A&M 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박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상기 내용은 주총결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 2. 정관 신규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의 목적
<p>제 9 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p> <p>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7 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p> <p>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 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제10조(신주인수권)</p> <p>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신설)</p> <p>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제 9 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p> <p>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p> <p>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제10조(신주인수권)</p> <p>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전환청구기간 변경</p> <p>종류주식 전환기간 변경</p> <p>종류주식 상환기간 변경</p> <p>표준정관 반영</p> <p>호 변경(4→5)</p>

<p>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삭제)</p> <p>(삭제)</p> <p>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호 변경(5→6)</p> <p>호 변경(6→7)</p> <p>3호와 사실상 중복</p>
---	--	---

<p>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한 날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2월(또는 365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2월(또는 36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23조(소집권자)</p> <p>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6조(의장)</p> <p>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한 날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밖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2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23조(소집권자)</p> <p>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6조(의장)</p> <p>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오류 정정</p> <p>오류 정정</p>
--	--	---------------------------

<p>제41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p> <p>②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p> <p>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p> <p>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p> <p>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신설)</p> <p>(신설)</p>	<p>제41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p> <p>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6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p> <p>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오류 정정</p>
---	---	--------------

<p>⑥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6조(이익배당)</p> <p>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57조(분기배당)</p> <p>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p>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6조(이익배당)</p> <p>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3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p> <p>제57조(중간배당)</p> <p>① 회사는 영업년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	--	--

<p>하기로 정한 금액</p> <p>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p> <p>5. 상법시행령 제 19 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p> <p>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p> <p>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신설)</p>	<p>미실현이익</p> <p>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p> <p>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p> <p>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p> <p>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58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p> <p>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p> <p>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p>	<p>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 신설</p>
---	---	----------------------------